

세계경제 포커스

World Economy Focus



2024년 2월 8일 Vol. 7 No. 6

ISSN 2635-5981

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

장영욱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(yojang@kiep.go.kr, Tel: 044-414-1221) 오태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(asroc101@kiep.go.kr, Tel: 044-414-1159) 이현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(hjeanlee@kiep.go.kr, Tel: 044-414-1226)





차 례

////////

- 1. 배경
- 2.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
- 3. 평가 및 전망

주요 내용

- ▶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'유럽경제안보전략(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)'을 발표한 후,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.
-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,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구축,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.
-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(1개), 권고문(1개), 백서(3개)의 형태로 제시됨.
- ▶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[① 외국인투자 심시규정 개정안]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여,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시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, 회원국별 제도간 조회를 개선하며, 심사 대상 투자 범위를 확대함.
 - [② 수출통제 백서]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EU 차원 수출통제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통 제 품목 관련 EU의 권한 확대, 정치협의체 신설, 이중용도 규정 평가 조기 시행 등을 제안함.
 - [③ 해외투자 백세] 주요국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제도에 대응하여,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에 관한 모니터링, 위험 식별 및 평가,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.
 - [④ 이중용도 기술 R&D 지원 백세]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, 국방혁신계획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·강화를 모색하며, 이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.
 - [⑤ 연구안보 개선에 관한 권고안] 연구혁신(R&I) 관련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EU 내 모든 공공 및 민간 연구 수행 조직과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.
- ▶ 유럽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제시되었거나 앞으로 제시될 조치들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또는 활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-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, 수출통제 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EU 진출 및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한편, 연구지원 강화는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내 연구기관의 EU 공동연구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.
-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EU 차원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경제안보 관련 조치를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

1. 배경

- EU 집행위원회(이하 EU 집행위)는 2023년 6월 '유럽경제안보전략(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)'을 발표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.
 - 코로나19 팬데믹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경제적 강압, 사이버 공격 등 글로벌 경제·통상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EU는 지난해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.1)
 - 유럽경제안보전략은 △ 촉진(Promoting), △ 보호(Protecting), △ 협력(Partnering)이라는 우선순위 분야(소위 '3P')를 규정하고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,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,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모색함.
 - 2023년 10월 EU 집행위는 발전 잠재력, 군사용도 전용 가능성, 인권침해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4대 핵심 기술(첨단반도체, 인공지능, 양자기술, 생명공학)을 선정하였고, 연말까지 해당 기술의 경제안 보 위협 요소를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음.2)
- 2024년 1월 EU 집행위는 유럽경제안보전략의 후속조치로 '촉진' 및 '보호'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이니셔 티브를 제안함.3)
 - EU가 제안한 이니셔티브는 현재 진행 중인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가장 시급한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음.
-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조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이니셔티브 3개와 연구 관련 이니셔티브 2개로 구성되며, 규정(1개), 권고문(1개), 백서(3개)의 형태로 제시됨(그림 1 참고).⁴⁾
- 미국, 중국 등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수출통제 및 투자 규제 정책에 대응하여, EU 역시 무역 및 투자에 관해 회원국간 통일, 조율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.
- 이번 후속조치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이니셔티브에는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, 수출통제에 관한 백 서, 아웃바운드 해외투자에 관한 백서가 포함됨.
- 또한 이중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 영역에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, EU 역시 연구개발 지원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유출 방지 등 연구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.
- 연구 관련 이니셔티브에는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백서, 연구안보 개선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이 포함됨.

¹⁾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(2023), "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," JOIN(2023) 20 final 및 오태현(2023. 6.), 「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」, KIEP 세계경제 포커스, 23-24 참고.

²⁾ C(2023) 6689 final.(2023. 10. 3.).

³⁾ European Commission(2024. 1. 24.), "Advancing European economic security: an introduction to five new initiatives," COM(2024) 22 final.

^{4) △} 규정(regulation): EU 법체계상 가장 상위법으로 EU 집행위 제안,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 승인을 통해 채택될 경우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함. △ 권고문(recommendation):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법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성격을 지님. △ 백서(white paper): 구체적인 법 제안 전 회원국, 이해관계자, 유럽의회, 유럽이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문건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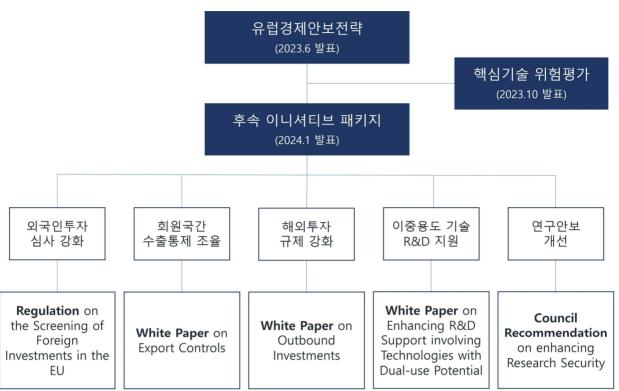


그림 1.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도식

자료: EC COM(2024) 22 Final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2.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

가. 투자 및 통상 관련 이니셔티브

1)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5)

- [배경] 2020년 10월 EU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(Regul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creening)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, 일부 회원국의 제도 미도입, 기존 규정 적용의 한계, 회원국별 상이한 절차 등의 문제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.
- 도입 논의 당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 회원국은 14개국이었으며, 2023년 6월 기준 22개국 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5개국(크로아티아, 불가리아, 그리스, 키프로스, 아일랜드)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.

⁵⁾ European Commission(2024), "Proposal for a Regulation o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on and repealing/ Regulation (EU) 2019/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," COM(2024) 23 final.



- 외국인투자 심시규정을 통해 미국, 영국, 스위스, 중국, 싱가포르, UAE 등에 의한 투자 약 1,200건이 사전심사를 받았으며, EU 집행위는 이 중 약 3%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전달함.
- 기존 규정은 외국인투자일지라도 EU 역내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할 경우 적용되지 않았으며, 회원국간 심사 절차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음.
- [주요 내용] 이번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은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, 회원국별 제도간 조화를 개선하며, 심사 대상 투자 범위를 더 넓게 적용함.
- [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도입 의무화 모든 EU 회원국이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며, 심사에 서 주요 내용이 회원국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함.
- [적용 범위] 외국인투자자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EU 자회사의 투자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.
- [심사 대생] 이니셔티브 부록 1과 부록 2에서 명시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필수적으로 심시를 받도록 함.
 - 심사 대상에는 호라이즌 유럽(Horizon Europe), 범유럽 운송·에너지·통신 네트워크, 유라톰(EURATOM) 연구 등 EU 관심 프로젝트(부록 1)와 이중용도 품목, 첨단반도체, 인공지능, 양자기술, 생명공학 등 경제안보 핵심 기술(부록 2)이 포함됨.
- [회원국 통보 의무 강화 투자 대상 회원국은 심사 대상이 되는 자국 내 투자에 대해 (i) 심층조시를 개시하거나, (ii) 예외적으로 심층조사 없이 제한조치를 시행한 경우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 이를 통보해야 함.
- [회원국 결정에 대한 관여 확대] 기존 규정에서는 최종 결정 권한이 투자 대상 회원국에 주어졌으나, 개정 안에 따르면 최종 결정 이전에 다른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함.
- [직권에 따른 외국인투자 심사 개시] EU 집행위 및 다른 회원국은 통보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15개월에 걸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.
- [외국인투자 고려 요소 의무 적용]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의 통제를 받는지 여부, 외국인투자자 및 자회사가 EU의 공공질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, 외국인투자자 및 자회사가 노동 관련 불법조치나 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여부, 제3국의 군사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.
- [발표 및 적용] 발효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, 발효일로부터 15개월 후 적용됨.
- [기대효과] EU 집행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EU 회원국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, EU 차원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함.
- 회원국별로 다른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특정하게 되며, 비EU 회원국 개인 및 단체의 통제를 받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심시규정이 확대 적용됨.
 - 외국인투자 평가 시 핵심 인프라, 핵심 기술, 전략원자재 공급, 민감정보 보호, 언론의 자유와 다양화 관점 등이 공통으로 적용됨.



2) 수출통제에 관한 백서⁶⁾

- [배경] 기존 이중용도 품목⁷⁾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안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며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의 필요성이 부상함.
- 만장일치를 요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러시아나 중국 등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, 주요국의 일방적인 수출통제 조치 및 EU 회원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조치 등이 EU 기업과 글로 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주요국의 일방적인 수출통제 조치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(2022년 10월),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통제(2023년 5월),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, 무인항공, 흑연 및 흑연을 포함한 제품의 수출통제(2024년 7~9월) 등이 있음.
 - EU 회원국 사례로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(2023년 6월), 스페인의 양자컴퓨팅 및 적층 제조 수출통제(2023년 5월), 리투아니아의 항공기 관련 수출금지(2023년 5월) 등이 있음.
- 2021년 채택된 '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' 관련 EU의 규정⁸⁾은 △ 신규 통제 품목 및 신규 규제 도입의 경직성, △ 역외국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미흡, △ 단일화된 EU의 접근 방식 부재, △ 국가별 통제 목록 채택 시 회원국간 조율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.
 - 특히 회원국별로 상이한 독자적인 수출통제 조치는 EU 차원의 단일화된 수출통제 시행에 분열을 야기 할 수 있음.
- [주요 내용] EU 집행위는 이번 수출통제 백서를 통해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EU 차원 수출통제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,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.
- [EU 차원의 통일된 수출통제]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품목을 EU 차원의 수출통제 품목(기존 EU 이중용도 기술규정 부록 1)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.
- [EU 정치협의체 신설] 수출통제 관련 EU 차원의 목소리를 통일하고 회원국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협의체를 신설함.
- [EU 회원국간 수출통제 협력] EU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공지하도록 하는 EU 집행위 권고안을 2024년 여름에 제안할 예정임.
- [EU 이중용도 규정 평가 시기 조정] 당초 2026~28년으로 예정된 EU 이중용도 규정 평가를 2025년으로 앞당기고, 2024년에 종합평가를 실시할 방침임.

⁶⁾ European Commission(2024), "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," COM(2024) 25 final.

⁷⁾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으로 개발된 기술, 상품 및 소프트웨어지만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하며, 첨단반도체, AI, 레이저 등 신기술이 포함됨.

⁸⁾ European Union(2021), "Regulation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, brokering, technical assistance, transit and transfer of dual-use item."



3) 해외투자에 관한 백서⁹⁾

- [배경] 주요국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통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상황에서 EU 역시 경제안보에 위협이되는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.
- 일본, 중국이 이미 해외투자 통제제도를 도입했고 미국 등이 제도 구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, EU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투자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관리하기로 함.
- EU 차원의 단일화된 해외투자 위험 평가 및 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이와 관련하여 회원 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부상함.
- 특히 해외투자에 따른 잠재적인 우려에 대한 식별, EU 해외투자의 범위 및 속성에 대한 정보 구축, 해외투자에 따른 안보위험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- [주요 내용] 이번 해외투자 백서를 통해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에 관한 모니터링, 위험 식별 및 평가, 규제방안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적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.
- 2023년 7월에 출범한 해외투자 관련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에 착수할 예정임.
 - 전문가 그룹은 2019년 1월 이후 이루어진 첨단반도체, 인공지능, 양자기술 등 민감 기술 분야 해외투 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방안 제시
 - 모니터링 대상의 지리적 범위는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으나, UN 현장 위반, 분쟁, 인권침해 등의 기준을 통한 사전 위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려 국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가능
- EU의 공동안보에 위험을 주는 해외투자를 식별한 후 이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임.
-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'적절하고 특정된 조치(proportionate and targeted responses)' 마련
- [향후 추진 계획] EU 집행위는 2024년 상반기 중 공개 의견수렴 절차(public consultation)를 진행한 후 2024년 여름 전에 권고안을 마련하고, 2025년 내 관련 법안 제안을 계획하고 있음.
 - 2024년 2~4월 중 EU 집행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개시
 - 2024년 여름까지 EU 차원의 권고안 마련
- 2025년 여름까지 EU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 평가 시행, 2025년 가을까지 해외투자 통제 관련 규제방 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안 제출

⁹⁾ European Commission, "White Paper on Outbound Investments," COM(2024) 24 final.



나. 연구개발 관련 이니셔티브

1)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의 R&D 지원 강화에 관한 백서¹⁰⁾

- [배경] 이중용도 잠재력이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EU 차원의 연구개발(R&D) 지원을 강화하고자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.
-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은 EU의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동 분야에서 EU의 경쟁우위를 유지·강화하고자 함.
 - 현행 호라이즌 유럽은 민간 부문 연구 지원에 한정, 유럽방위기금(EDF)은 국방 부문 연구 지원에만 한 정되어 있고, 민간과 국방 부문의 연구·개발 상호교류에 제약이 있음.
-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에 대한 R&D는 민간 및 국방 부문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어 녹색 및 디지털 전환, 유럽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.
- [주요 내용] 이중용도 기술 R&D 지원에 관한 백서는 공공기관, 시민사회, 산업계, 학계와의 포괄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세 가지의 개방형 선택지를 제시했고, 2024년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.11)
- [선택지 1] 현행 체제 기반에서의 추가 진행
 - EU의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하에서 진행하되 민간과 국방 부문에서의 시너지 발휘 및 상호교류가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발전시킴.
 - 유럽혁신위원회(EIC) 전환계획, EU 국방혁신계획(EUDIS), InvestEU,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, EU 집행위, 유럽투자은행(EIB), 유럽투자펀드(European Investment Fund)의 '이중용도 잠재력이 있는 기술'에 대한 공통 정의를 수립하고 공동투자를 진행함.
- [선택지 2]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의 특정 분야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독점적 중점(exclusive focus) 경향 제거
 - 전략적으로 부각되는 기술 관련 우수 제안은 프로그램 지원 분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도록 함.
-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은 EDF 후속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관련 산업 내 R&D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민간 및 방위산업 부문의 상호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.
- [선택지 3]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 R&D에 초점을 맞춘 특화 도구(instrument) 형성
- △ 자체적 예산과 제도를 보유했고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 연구에 특화된 도구 도입, △ 특정 메 커니즘·구조 혹은 공공조달 또는 조달 지원도구를 통한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의 EU 시장 진출 지원 강화, △ '이중용도 목적(dual-use by design)'의 플래그십 프로젝트 계획 등을 들 수 있음.
- '선택지 3'은 이중용도 기술 R&D 자체에 대한 가시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으나, 엄격한 자원배분, 이

¹⁰⁾ European Commission(2024), "White paper on options for enhancing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volving technologies with dual-use potential," COM(2024) 27 final.

^{11) &#}x27;선택지 2'와 '선택지 3'은 상호배타적임.



중용도 R&D/민간전용 R&D/EDF 후속 국방전용 활동 간의 우선순위 결정, 이중용도 목적의 연구가 민간·국방 부문 최종재의 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R&D 지원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.

2) 연구안보 개선에 관한 백서12)

- [배경] 핵심 및 이중용도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, 유럽 연구혁신(R&I: Research & Innovation)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유출 등 안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개선안을 제시함.
- '연구안보'는 △ EU 및 회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지식(critical knowledge), 노하우 (know-how) 및 기술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전(제3국으로의 군사 목적 이전 등), △ 연구에 미치는 악의적 영향, △ 윤리 혹은 무결성(integrity) 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의미함.13)
- 경제 및 군사 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연구의 개방성 및 국제교류는 기술유출과 연구결과 오남용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 차원의 관리가 필요함.
- [주요 내용] EU 집행위는 R&I 관련 '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폐쇄적(as open as possible, as closed as necessary)'이라는 원칙하에 EU 내 모든 공공 및 민간 연구 수행 조직과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.
- 연구 보호조치의 국제화를 위해 △ 학문의 자유, △ 부문별 자체 거버넌스, △ 위험기반 및 비례성에 대한 정책, △ 초국가적인 접근, △ 모든 형태의 차별 및 오명 회피의 원칙을 제시함.
- [연구자금 지원 기관] △ 자금 신청 절차에서 위험평가(risk appraisal)를 포함, △수혜자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평가하도록 권장, △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의 경우, 수혜자들이 위험 완화조치에 합의하도록 독려하고 유망 역외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.
- [연구기관] △ 국제협력을 위한 내부 위험 평가 및 실사 절차 도입, △ 조직 내 연구안보 책임 부여, 인지 제고 활동 및 훈련 개발, △ 신규 연구직 직원 채용 시 연구보안 고려, △ 민감 지식 및 연구시설 보호, 구획화(compartmentalism)나 강력한 사이버보안 조치와 같은 물리적 및 가상적인 보호조치 도입을 추진함.
- [EU의 역할] △유럽 연구안보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 촉진 및 실무 조직 형성, △ 연구 기관의 향후 파트너 실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개발 및 적용 가능한 EU 법률해석 제공, △ 권고의 수용, 유럽 내 동료 학습 및 접근 일관성 추진, 격년 단위의 추진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함.

¹²⁾ 동 문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사회 권고의 형식으로 제안됨. European Commission(2024), "COUNCIL RECOMMENDATION on enhancing research security," COM(2024) 26 final.

¹³⁾ Research Security는 좁은 의미의 '연구보안'을 포함. 핵심 지식 연구에 관련된 전반적인 안보 위험을 다루기 때문에 '연구 안보'로 번역하였음.



3. 평가 및 전망

가. 평가

- [주요 반응]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패키지는 외부의 압력에 맞서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나, 구속력이 담보된 구체적인 행동계획 발표로 이어지지 않아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도 상존함.
- EU 및 독일,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동 패키지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지지하고 있음.
 - EU 집행위 경제재정총국(DG ECFIN)은 이번 조치가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하에서 EU의 이익을 보호 하는 동시에 다자주의 질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함. 14)
 - 독일 연방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부 장관인 Robert Habaek은 '투자와 대외무역에 대한 경계심을 제고'하기 위해 '주권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, 배터리, 재생에너지, 반도체, 녹색 철강, 수소 등의 해결
 및 생산 촉진을 위한 법적인 틀의 필요성'을 들어 동 경제안보 패키지의 발표를 환영함.15)
 - 또한 동 패키지에 프랑스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반영되어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받음.16)
- 이번 패키지에는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으나, 다수 언론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완화 (de-risking)가 동 패키지의 주요 목적이라고 평가함.
 - Politico는 동 패키지의 발표가 미중 간 경쟁 국면에서 "EU 또한 (미국의 편에서) 싸움에 참여할 준비" 를 의미한다고 보았음.17)
 - 또한 Wall Street Journal의 논설에서는 "중국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부재"했으나 "유럽이 드디어 중 국 문제를 인지했다"라고 해석함.18)
 - 이 외에도 Euractiv, LesEchos, Le Monde 등에서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조치가 중국과 유럽 간 경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고 평가함.19)
- 한편 동 패기지의 방향성 및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함.
- 네덜란드의 Clingendael은 "EU가 안보와 위험에 초점을 맞춘 방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술 리더십 확보 및 파트너십 촉진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"고 주장함. 20)
- 독일기계산업협회(VDMA)는 "EU 안보는 민감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로 이미 보호"되고 있어 "유럽의

¹⁴⁾ 제11차 한-EU 거시경제대화(2024. 1. 31.).

¹⁵⁾ BMWK(2023. 1. 24.), "Bundesminister Habeck begrüßt neues Paket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zur Wirtschaftssicherheit," 언론보도자료(검색일: 2024. 2. 1.).

¹⁶⁾ Euronews(2024. 1. 24.), "EU set to tighten scrutiny over foreign investments in key sectors with new economic security plans," 온라인 기사(검색일: 2024. 2. 1.).

¹⁷⁾ Politico(2024. 1. 19.), "EU warms up for fight over economic security," 온라인 기사(검색일: 2024. 2. 1.).

¹⁸⁾ Wall Street Journal(2024. 1. 25.), "Welcome, Warily, the EU Getting Serious on China," 온라인 기사(검색일: 2024. 2. 1.).

¹⁹⁾ Euractiv(2024. 1. 25.), "EU reveals new economic security plan to resist 'fierce' Chinese tech competition,"; LesEchos "Securite economique: Bruxelles veut mobiliser les Vingt-Sept"; Le Monde "La Commission europeenne veut renforcer le controle des investissements etrangers au sein de l'UE" 온라인 기사(검색일: 2024. 2. 1.).

²⁰⁾ Clingendael(2023. 6. 26.), "The European Union is unwisely defensive in its economic security," 온라인 기사(검색일: 2024. 2. 1.).



- 역외지역 투자가 역내 공공안보 및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"고 보아, 동 패키지가 "(역외투자가 가져오는) 경제적 성공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있다"고 주장함.²¹⁾
- ECFR의 Alicja Bachulska 연구위원은 동 패키지가 "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"이지만 "모호한 개선 사항"에 대해 비판하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적함.²²⁾
- 또한 다수 언론에서 동 패키지 상당수가 구속력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고, 투자 스크리닝 등 민감 이슈에 대해서는 EU 역내에서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.23)
- [종합 평개] 경제안보 주요 분야 위험 식별 및 회원국간 의견 조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, 아직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외에는 구속력 있는 규정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함.
- 민감 품목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, 해외투자, 수출,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 - 최근의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EU 제도 중 미흡한 분야를 일별하였고 미국, 중국, 일본 등의 관련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- 다만 다섯 개 이니셔티브 중 구속력 있는 조항을 포함한 규정은 하나에 불과하며, 다른 이니셔티브는 구속 력이 없는 이사회 권고안이나 의견수렴 개시를 위한 백서 형태로 제시되어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이른 단계임.
 - 한-EU 거시경제대화에 참석한 EU 측 인사는 회원국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 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.
 - 현재 제시된 주요 분야 정책이 향후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
나. 전망 및 시사점

- [전망] 이번에 제시된 후속조치는 각 이니셔티브에 제시된 일정표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나, 2024년에 유럽의회 선거, 새로운 EU 집행위 구성 등의 이슈가 있어 얼마나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함.
-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과 연구안보 관련 권고안은 일반적인 EU의 법적 절차를 거쳐 채택될 예정이며,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양쪽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택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.
 - 예컨대 기존 외국인투자 심사규정의 경우, 2017년 9월에 처음 제안된 후 2019년 3월에 채택되었고
 2020년 10월에 발효됨.
 - 이번 개정안 역시 채택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, 채택 후에도 15개월이 지나서 발효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음.

²¹⁾ VDMA(2023. 1. 24.), "BEU-Regeln sollten Investitionen ankurbeln, nicht behindern!," 언론보도자료(검색일: 2024. 2. 1.).

²²⁾ Euractiv(2024. 1. 25.), "EU reveals new economic security plan to resist 'fierce' Chinese tech competition," 온라인 기사(검색일: 2024. 2. 1.).

²³⁾ *Ibid*; Wall Street Journal(2024. 1. 25.), "Welcome, Warily, the EU Getting Serious on China," 온라인 기사(검색일: 2024. 2. 1.).



- 이번에 백서 형태로 제시된 해외투자, 수출통제, 이중용도 기술 R&D 지원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년 여름 중 권고안, 법안 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.
 - 해외투자 권고안 관련 의견수렴은 2024년 1월 25일~4월 30일까지, 수출통제 및 이중용도 기술 R&D 관련 의견수렴은 2024년 2월 2일에서 4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,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정책 대안으로 발전될 예정임.
- EU 집행위는 이번 유럽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나, 해외투자 규제, 이중용도 기술 지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함.
 -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새로운 EU 집행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논의 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음.
 - 법안 및 권고안이 올해 내에 제시된다 하더라도 실제 채택 및 시행은 2025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- [시사점] 이번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유럽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제시되었거나 앞으로 제시될 조치들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또는 활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- [후속조치 영향 파악]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, 수출통제 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EU 진출 및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속성 및 채택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함.
 - 기존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 시행 이후 심사 대상이 되었던 기업은 대부분 미국(인수 32.2%, 그린필 드 투자 46.5%, 2022년 기준)과 영국(인수 25.1%, 그린필드 투자 19.0%)으로 우리나라의 비중은 매우 작았으나, 향후 규정 적용 범위 확대 시 우리 배터리, 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EU 진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,24)
 - EU 차원의 이중용도 품목 목록 작성 추이에 따라 국내 수입기업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 EU에서 이중용도 기술 R&D 지원이 강화될 경우, 한국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연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.
 - 현재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, 가입 확정 전에도 유럽 지역 연구자 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.25)
-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 협의 채널 및 EU의 의견수렴 통로를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.
- 한-EU 공급망산업정책 대화(2023년 12월 시행), 한-EU 거시경제대화(2024년 1월 시행) 등 정례화된 공식 대화체와 정상회담, G20 정상회의 등 외교 채널, 민간기관간 트랙 2.0 대화체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, 수출통제 백서, 해외투자 백서, R&D 지원 백서 등에 대한 의견수렴

²⁴⁾ European Commission(2023. 10. 19.), "Third Annual Report on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."

²⁵⁾ 호라이즌 유럽 웹사이트, https://research-and-innovation.ec.europa.eu/strategy/strategy-2020-2024/europe-world/international-cooperation/bilateral-cooperation-science-and-technology-agreements-non-eu-countries/korea_en(검색일: 2024. 2. 1.).



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(의견수렴 링크는 각주 참고).26)

- [관련 정책동향 파악]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EU 차원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경제안보 관련 조치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- 현재 EU는 단일시장긴급조치, 기후중립산업법, 핵심원자재법, 공급망실사지침 등 역내 산업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안보조치를 추진하고 있음(표 1 참고).
 -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 공급망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. KIEP

표 1. EU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법 추진 현황

정책	주요 내용	시행/채택 일정
단일시장긴급조치	팬데믹, 전쟁 등 위기 발생 시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유지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재고 비축 의무 부과, 기업에 재고 및 생산량에 대한 정보 요청, 특정 주문 우선 생산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	2022년 9월 제안, 현재 승인 절차 진행 중
기후중립산업법	재생에너지, 배터리 기술 등 8개 '기후중립 전략기술'을 정하고, 동 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연 간 수요의 40%까지 증대하기로 하였으며, 이를 위해 규 제 간소화,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, 정부조달 친환경기 준 강화 등의 지원방안 제시	2023년 2월 제안, 현재 승인 절차 진행 중
핵심원자재법	17종의 전략원자재에 대한 역내 채굴(10%), 가공(40%), 재활용(25%)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,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을 65% 이하로 제한하였으며, 이를 위해 허가 절차 간소화, 재원 접근성 개선, 공급망 관리, 국제협력 등의 지원방안 제시	2023년 12월 삼자합의 타결, 2024년 내 채택 예상
공급망실사지침	EU 역내 대기업 및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 비(非)EU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, 위반 시 벌금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등 부과 가능	2023년 12월 삼자합의 타결, 2024년 내 채택 예상
역외보조금 규정	EU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재정 적 지원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	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

자료: EU 공식문건을 토대로 저자 정리.

^{26) -} 외국인 투자 관련(~2024년 4월 2일): https://ec.europa.eu/info/law/better-regulation/have-your-say/initiatives/13739-Screen ing-of-foreign-direct-investments-FDI-evaluation-and-revision-of-the-EU-framework_en.

⁻ 해외투자 관련(~2024년 4월 30일): https://ec.europa.eu/info/law/better-regulation/have-your-say/initiatives/14143-Recommendation-to-monitor-outbound-investments-for-further-risk-assessment en.

⁻ 이중용도 기술 R&D 지원 관련(~2024년 4월 30일): https://ec.europa.eu/info/law/better-regulation/have-your-say/initiatives/1 4060-RD-on-dual-use-technologies-options-for-support en.

⁻ 수출통제 관련(~2024년 4월 30일): https://ec.europa.eu/info/law/better-regulation/have-your-say/initiatives/14060-RD-on-dual-use-technologies-options-for-support_en.